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144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14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2나23033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한AA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A)

【피고,피상고인】신CA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C 담당변호사 최BB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2나23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DA은행이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KK상사 주식회사(이하 'KK상사'라고 한다)에게 수 차례에 걸쳐 대출을 한 사실,

KK상사는 각 대출 당시 DA은행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DA은행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KK상사가 1997. 11. 6. 당좌거래정지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DA은행은 1997. 11. 7.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고 1998. 4. 8. 피고에게 보증채무 314,973,869원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1998. 6. 29. DA은행으로부터 KK상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31. 원고에게 원고의 1998. 4. 8.자 보증채무 청구액 314,973,869원 중 4,110원을 삭감한 314,969,759원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2000. 6. 2. 위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 원고의 1998. 4. 8.자 청구액 중 원금 3억 원에 대한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이자는 4,1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5. 31. 원고의 1998. 4. 8.자 보증채무청구액에서 4,110원이 감액된 314,969,759원의 보증채무이행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고, 피고가 통지한 보증채무 승인액은 원고의 청구액과의 차이가 극히 경미하여 신의칙상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보증채무의 변제의 제공을 다 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0. 6. 6.부터 위 보증채무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지연이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보증채무의 원금에 대한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가 4,110원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도 보증채무의 원금에 대한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가 4,11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1998. 4. 8.자 보증채무이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회신한 2000. 5. 31.자 채무승인통지서(을 제5호증)에는, 보증채무이행승인내용 항목의 신청이자란에 "14,973,869원", 승인이자란에 "14,969,759원", 증감이자란에 "-4,1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조건

항목에 "99. 7. 16.부터 99. 11. 29.까지의 이자는 채권자지체 사유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종속채무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이행청구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1998. 4. 8.까지의 지연이자의 계산을 바로잡아 그 중 4,110원을 승인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제1심 이래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율은 원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24.5%, 원금 2억 원에 대하여는 15.5%, 원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19.5%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지연이자율에 의하면 피고가 승인하지 아니한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는 합계 약 19,893,150원 $\{= (50,000,000\text{원} \times 0.245 \times 137\text{일}/365\text{일}) + (200,000,000\text{원} \times 0.155 \times 137\text{일}/365\text{일}) + (50,000,000\text{원} \times 0.195 \times 137\text{일}/365\text{일})\}$ 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2000. 5. 31. 원고에게 한 채무승인통지는 이행을 거절하는 지연이자의 수액이 근 2,000만 원에 달하여 그것이 전체 보증채무원리금의 수액과 비교하여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연이자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는 것에 별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무승인통지에서 이러한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시킨 채 그 부분 지연이자에 관한 지급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데다가, 만일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일부 이행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가 나머지 승인된 일부 보증채무원리금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채무승인통지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보증채무 중 1999. 7. 16.부터 1999. 11. 29.까지의 지연이자 부분은 4,110원이고 피고가 승인하지 아니한 지연이자는 위 금원에 한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승인통지한 보증채무액과 원고의 청구액과의 차이가 극히 경미하므로 피고의 2000. 5. 31.자 채무승인통지는 신의칙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서 피고는 보증채무의 변제를 다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변제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